

## 火災豫防

# 무엇이 問題인가?

火災豫防은 하나의 커다란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機關과 個人們이 財政的으로나 技術的으로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各 技術分野의 實務者들에게 그들이 맡고 있는 分野別로 火災豫防 問題에 관한 意見을 들어 본다.  
 <編輯者註>

## 建築에 따른 問題

金炳暉

&lt;點檢三部 確認二課長&gt;

### 目 次

1. 序 言
2. 建築點檢 現況
3. 建築點檢에 따른 改善狀況
4. 建築點檢의 問題點
5. 建築點檢의 方向

### 1. 序 言

點檢實務經歷 3 年이 지난 지금 點檢業務가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한 사람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大學에서 建築學을 專攻하고 當 協會에 入社하여 맡겨진 業務는 專攻을 다른 觀點에서 새로 工夫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實感하게

하여 주었다. 一般的으로 工學徒는 自然科學을時代性에 맞도록 具現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建築點檢이란 이미 만들어진 이들 具現體(建物 및 施設)의 火災事故에 對하여 科學的方法으로 그 危險度를豫見할 수 있는 充分한 根據를 提示함과 同時に 이에 對한 對策을講究하여야 하는 業務로서 전혀 새로운 分野의 學問이라는 것을 實感하게 된다.

火災事故에 對한豫見 및 對策이合理的이어야 하고 未來에 的中시키기 為해서는 時間을超越해야 한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自然科學分野에서 火災를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 大火災事例

에서 證明되고 있다. 어떻게 解決할까에 對하여는 앞으로 우리의 宿題이며 우리는 진지한 태도로 點檢業務에 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火災豫防에 對하여 建築의 인面에서 現況 및 그對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建築點檢現況

火災를 建築點檢에 關聯시켜 살펴 보면 일단火災가 어떤 形態로 發生한 後에 對하여 檢討하는 것이 建築點檢이라 할 수 있겠다. 例컨데 어떻게 하면 火災를 意圖된範圍에만 局限시키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人命을 安全하게 할 수 있게 하는가에 對한 點檢이 建築點檢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建築點檢은 불을 끄기 為한 設備가 아니라 建築 그自體인 것이다. 그려므로 建築點檢結果에서 改修事項의 大部分은 建築當時에 檢討되어야 한다는 點에서 當協會가 點檢하는 既存建築物에 있어서는 그改善이 極히 困難하며 설사改善된다 하더라도 部分的인改善에 그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가. 建築點檢基準에 對하여

基準이란 보편 타당성이 있는 標準이 되는 根據를 말한다. 建築點檢도 一定한 基準下에서 適行되어야 함은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當協會의 建築點檢基準은 建築法中避難 및 防火規定에 根據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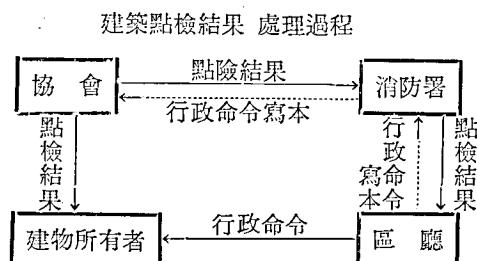
建築法은 1960年代에 들어와 整理되기始作한以來一貫性없는 法改正이 자주 反復되는 等過渡期의 現狀을 보이고 있다. 建築法의 이러한脆弱點은 例컨데 舊法에 違法한 建築物은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產損失에 關係없이 新法에適用을 받지 않는다는 消極的인 解釋으로適用되고 있다. 이렇게 모호한 點이 內包된 基準을 根據로 하고 있는 當協會로서는 建築點檢에서 方向을 謀索하려고 온갖 努力を 다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希望의 方向으로의 提示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나. 點檢結果處理에 對하여

建築點檢結果는 當協會의 他點檢分野와 달리 消防署와는 內容에 있어서 關聯이 없고 區廳과 直接 連結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妥當하다.

그理由는 建築點檢基準이 消防法이 아니고 建築法에 根據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建築點檢處理過程을 圖表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重要視해야 할 것은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點檢結果는 行政命令化하고 있다는事實이다. 一端 點檢上에서 나타난 建築指摘事項을 改善하기 為한 積極的인 改善策으로 強力한 罰則이 있는 行政命令化한다는 것은妥當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內容이 建築當時가 아님改善할 수 없는 內容이라는 點을 考慮한다면 再考해야 할 點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點이充分히 考慮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 項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改修命令 履行實積이 極히 低調한 結果를 招來하는 큰 理由가 되는 것이다.

### 다. 建築點檢內容에 對하여

建築點檢基準에서 본 바와 같이 當協會의 基準制定作業이進行되고 있으며 이作業은 努力 및 長久한 時間의 所產일 것으로 보여진다.

現在까지의 當協會의 建築點檢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

- 1) 耐火構造로 해야할 建築物의 規制
- 2) 建築物의 用途, 面積, 높이에 따른 避難施設의 規制
- 3) 建築物의 用途, 面積, 높이 内裝材에 따른 防火區劃의 規制
- 4) 其他 内裝材 및 非常用 昇降機의 規制等

이들 내용은 建築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들을 適用할 때 問題가 되는 것은 各項에 對한 技術基準이 未治하여 施工이 不可能한 것이 상당수에 達함은勿論 適用對象도 애매모호한 點이 상당수에 達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點檢結果는 各 建物 狀況에 따른 응통성 및 充分한 消化敘이 法條文 羅列式으로 變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點檢者自身도 消化하지 못하는 内容에 對하여 改善을 바란다는 것은 奇蹟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라. 建築點檢과 保險料率에 對하여

當 協會의 安全點檢結果는 保險料算定과 直接間接으로 關聯되고 있다. 當 協會設立以後부터 防災의 인 要素가 本格的으로 保險料算定에 影響을 미치게 되기始作하였다. 그러나合理的인 方法으로 保險料算定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에 對하여는 아직은 根本의인 檢討의 結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建物構造 및 各種割增, 割引要素는 安全點檢 바로 그것이라 해도 좋을 程度로 直接 連結지울 수 있는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

아직은 純粹한 防災의인 面에 比하여 保險의 인 面에서의 點檢은 微弱하지만 앞으로의 開發의 餘地는 充分한 것으로 確信할 수 있다.

### 3. 建築點檢에 따른 改善狀況

建築點檢에 따른 改善率은 앞에서 살펴 본 結果에 따라 極히 低調하게 나타나고 있다. 75年 度 中半期부터 76年 度 初半期까지의 點檢實績에서 나타난 非公式 統計에 依하면 改善率은 다음과 바와 같이 된다.

點檢改善狀況

建築	化工	電氣	機械	備考
8%	24%	34%	16%	指摘事項 件에 對한 非公式 資料 平均 20.5%

이 表로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各 分野中에서 建築 改善率이 8%로서 가장 不良한 것으로 나타난다. 改善率 8%를 좀 더 살펴보면 大部分이 一部 補完으로 解決되는 事項으로서 例컨대 舊 大然閣建物에서와 같이 建物 一部를 避難階段으로 改造한 事例는 거의 없는 狀況으로서 根本의인 改善은 悲觀의이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改善率이 不良한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建築改善事項이란 既存建物에서는 그 改善費用이 建築當時에 比하여 2~3倍에 達하며 間接의인 損失 또한 莫大하므로 建物所有者가 斷案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둘째 위 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平均改善率이 約 20%로서 이는 火災에 對한 建物所有者的 認識이 缺乏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防災行政에 問題가 있다.

結果的으로 이와 같은 3 가지 理由를 分析評價하여 適切한 對策을 세우는 것이 建築點檢의 問題點解消을 為한 捷徑이라고 보아도 좋다는 判斷은 옳은 것으로 認定되나 이 3 가지 理由는 그 하나 하나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正確한 方向提示로서 長期의인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建築點檢의 問題點

前項의 内容들을 整理하면 建築點檢의 問題點에 對한 大略의인 判斷이 可能하게 된다.

가) 改善에 所要되는 直接 및 間接의 莫大한 經費

建築點檢結果 火災 및 避難上 脆弱點의 大部分은 建築當時가 아니면 改善이 困難하므로 改善率이 低調하다. 例컨대 11層以上 建築物의 直通階段에 特別避難階段設置, 大規模 工場 또는 映畫館 建築物에서의 木造 지붕을 耐火構造로 補完하는 事項等은 改善實積이 全無한 狀態이다.

現社會의 意識構造로 보아 이러한 事項은 改善될 展望은 없다고 봐야 좋을 것이다.

아무리 強力한 規制를 하여 改修誘導를 한다 하여도 實現可能性이 稀薄하다는 것이 常識의 으로 되어 있다.

#### 나) 建築點檢 技術의 不足

國內 初有의 大規模 專門防災機構로서의 當協會의 設立은 明實相符한 면모를 갖추기 為하여서는 內面의 成長이 急先務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必然의 現實인 것이다.

內面의 成長을 助長하는 要素로서 重要한 것은 點檢技術의 開發을 들 수 있다. 點檢技術의 開發은 點檢質의 向上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前項에서도 檢討한 바와 같이 建築點檢基準은 定立을 為한 過渡期의 전통을 겪고 있는 建築法을 根據로 하고 있으므로 建築點檢을 이 過中에 휴식일 危險이 當協會의 建築點檢을 위협하고 있다.

例컨대 建築法에 依하면 꼭같은 規模의 建物로서 同一한 人命 및 火災危險要素가 內在하는 標準으로 建築時點에 따라 點檢結果는 相異한 내용이 되고 있다.

이를 防災의 面에서 볼 때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5. 建築點檢의 方向

前項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建築點檢의 問題點의 解決은 決코 不可抗力의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어느 方法을 擇하는 것이 最善의 것인가를 分析하여 決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할 것이다.

當協會는 순수한 火災豫防을 主業務로 誕生되었지만 當協會 名稱이 意味하는 것처럼 火災保險의 侧面에서 火災豫防業務를 觀察하여 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例컨대 改善에 所要되는 直接 間接의 莫大한 經費는 保險料率로 調整해 준다면, 容易한 解決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確信한다. 좀더 具體적으로 說明한다면 映畫館의 木造지붕률을 耐火構造로 改修하도록 誘導하는 積極的인 方法을 行政命令에 依하기보다는 保險料로 調整하는 方向으로 改修를 誘導하는 것이 양쪽 모두 부담을 적게 주는 結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方案은 當協會에게 一石二鳥의 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各 建物所有者는 未改修事項이 犯法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建築改修事項中 保險料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事項이 어떤 것인가를 認識하게 되며 이로 因하여 危險한 것 또는 建物形便上 改修가 可能한 順位에 따라 他意가 아닌 自發의 改善誘導의 分위기를 造成할 수 있게 됨과 同時に 點檢에 密着하게 되어 點檢職員에게 使命感을 불러 일으키게 할 것이다.

둘째 點檢 職員은 點檢 技術이 더욱 向上된다 고 해도 現在의 建築法 법주 内에서는 보다 進步된 改善方案을 이룩할 수 있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自發의 技術開發에 善意의 競爭할 수 있는 분위기를 造成하게 될 것이며, 이로 因하여 當協會의 點檢技術은 急速한 進步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以上 두가지 利點은 바로 當協會가 바라는 일이며 當協會의 権威를 높이는 일인기도 한 것이다. 先進諸國의 保險會社의 防災活動을 보드라도 모두 이와같은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세삼스러운 일이 아님을 強調해 둔다.

#### 6. 結論

이제까지 建築點檢 實態와 이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 方向等을 大略 살펴보았다. 本 檢討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建築點檢結果에 따른 改修誘導를 為行政命令은 改修의 最善策으로서의 그 効果를 再考할 必要가 있으며

둘째 建築點檢技術의 向上은 點檢職員各者の 技術의in 力量을 實務에 密着시킬 수 있도록 誘導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火災豫防이란 建築點檢이 主가 되는 것이 아니고 自然科學의 綜合으로서의 防災工學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텃붙여 保險의in 面과 調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 建築點檢에 對한 檢討는 火災豫防의 아주 작은 部分만을 斷片的으로 다룬 結果가 되었다.

充分한 經驗과 資料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保險과 防災工學側面에서의 再檢討가 빠른 時日内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서 얻은 結果는 當協會의 將來를 為하여 조그만 虛點이라도 알차게 変워 가는데 밀거름으로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